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1. 20 선고 2021나52602(본소), 2021나52619(반소) 판결
[건물인도 · 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, 피항소인

A

피고, 항소인 B

피고(반소원고), 항소인

C

변 론 종 결 2021. 11. 25.

판 결 선 고 2022. 1. 20.

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7. 7. 선고 2020가단5167204(본소), 2020
가단30017(반소) 판결

주 문

1. 피고 B의 이 사건 본소에 관한 항소와 피고(반소원고) C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 중 피고 B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 B가 부담하고, 피고(반소원고) C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(반소원고) C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[청구취지]

1. 본소 청구취지

가. 피고 B는 원고(반소피고, 이하 '원고'라 한다)에게,

1) 제1심 판결문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같은 별지 도면 표시 ①, ②, ③, ④,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(지하 D호) 21.21㎡를 인도하고,

2) 2019. 1. 11.부터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4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나. 피고(반소원고, 이하 '피고'라 한다) C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서 퇴거하라.

2. 반소 청구취지

원고는 피고 C에게 18,2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. 3. 10.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[항소취지]

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, 피고 C에 대하여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도 없으며,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 론

그렇다면 제1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피고 B의 항소와 피고 C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구광현, 판사 최호식, 판사 이정형